

『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』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3월 23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가.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협의회에서 자문·협의된 사항에 대해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.
- 나. 위원의 해촉 기준 마련과 회의소집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

어문 규정을 정비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
- 나. 위원의 해촉 사항을 규정(안 제4조)
- 다. 협의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·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함(안 제6조)
- 라. 협의회가 자문·협의를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(안 제8조)
- 마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3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hy0108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”를 “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”로 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”를 “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
2.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
3.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
4.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자문을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
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3조제1항 중 “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”을 “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③ 시장은 위원이 사망·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협의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.
- ③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·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조의 제목 “(의결정족수)”를 “(의사·의결정족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”를 “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보고)”를 “(보고 및 자문·협의사항의 처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”를 “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협의회가 자문·협의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1인과 서기 1인”을 “1명과 서기 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건정책과장”을 “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<u>운영 조례</u>	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<u>운영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-----
제2조(기능)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한다.	제2조(기능) ①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-----
1.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및 실천	1.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
2.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지원	2.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
3.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, 제9조,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	3.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
4.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	4.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자문을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
<신 설>	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 건의할 수 있다.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3조(구성) ① -----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학계, 언론계, 체육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	③ ----- ----- 시장----- -----.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	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<신 설>	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<신 설>	③ 시장은 위원이 사망·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제5조(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)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직무	제5조(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) ① -----

를 통할한다. ② (생 략) 제6조(회의소집) ① (생 략) ② <u>협회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년2회 소집하고,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</u> 1. <u>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</u> 2. <u>위원 5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</u> 3. <u>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</u> <신 설>	-- -- 총괄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제6조(회의소집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협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.</u> ③ <u>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·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 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----- 1 ----- 1 명과 서기 1명-----. ② ----- <u>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</u>----- -----. 제11조(수당 등)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<u>대하여</u>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인천광역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7조(의결정족수)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제8조(보고)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신 설>	제7조(의사·의결정족수) ----- -----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--. 제8조(보고 및 자문·협의사항의 처리) ① ----- - <u>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</u> -----. ② <u>시장은 협의회가 자문·협의</u>	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나, 협의회에서 신규 사업 의견을 제시할 경우 필요한 사업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(안 제8조)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금연, 절주, 신체활동, 영양, 비만 등 사업이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각 분야별 국비 및 지방비를 투입 전문 인력을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.

그러나 협의회에서 신규 사업을 제시할 경우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 시점에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.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한 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하므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.

4. 작성자

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장 신중환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자치법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☐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 ☐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(책임) ☐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(건강생활 지원등) 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(건강생활실천협의회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정비대상	
관련자료	

〈지방자치법〉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4.6., 2007.5.17., 2009.12.29., 2011.7.14.>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가. ~카. 생략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납골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~ 6. 생략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〈국민건강증진법〉

제3조(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조(건강생활의 지원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건강생활실천협의회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